

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이의신청 운영 계획

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서류심사가 자치구에서 완료됨에 따라 탈락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자 함

☐ 추진개요 및 접수결과

- 접수기간 : '22. 1. 24.(월) ~ 2. 7.(월)
- 지원대상 : (공고일기준)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자
중 가구소득 중위 120%이하
- 지원내용 : 100만원 / 1인
- 접수결과 : 총 14,194명(2.7. 접수완료일 기준)
- 서류심사 결과 : 12,222명(자치구, 시 서류심사 완료)



☐ 이의신청 운영계획

- 접수기간 : '22. 3. 7.(월) ~ 3. 11.(금) [5일간]
※ 자치구 방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, 온라인 신청은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도착한 신청서 심사
- 대 상 자 :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자 중 탈락자
- 이의신청방법 : ① 자치구 방문 또는 온라인(이메일)으로 접수 →
② 증빙서류 제출 → ③ 자치구 검토 →
④ 지급(별도신청 없음)
- 심사방법 : 심의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심사(필요시 현장방문 등 병행)
및 시에서 중복여부 확인 후 최종 선정
※ 심사기간 : '22. 3. 14.(월) ~ 3. 18.(금) [5일간]

○ 심의기준

① 가구원수 산정

-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일('22.1.17)까지 가구원수 변동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(출생, 사망, 이혼에 따라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) 및 가족관계 단절 등 현실적인 사유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등
- 건강보험 부양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 : 가구구성이 실제 법적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(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)
 - ▶ 예) 이혼후 건강보험 피부양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, 이혼한 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관계가 다를 경우 등

② 소득금액 정정

- 소득금액 판정기준인 '21년도 12월 건보료가 조정된 경우
- 공고일('22.1.17) 이전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있었으나, 소득금액 판정 기준인 '21.12월 건보료에 반영이 안된 경우 '22.1월 보험료로 반영
 - ▶ 예1) '22.1.1.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, '21.12월 건보료는 지역 가입자로 납부한 경우
 - ▶ 예2) '22.1.1.자 이사, 단독세대 독립 등 세대원 변동이 있었으나, '21.12월 건보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

③ 기타사항

- 임시소득 반영 등으로 '21.12월 건보료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

※ '21.12월 건강보험료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에는 '21.10.~12. 3개월 평균 금액으로 소득 확인

- 서류착오, 오기·정정사항 등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

○ 이의신청 심의 방법 : 자치구 방침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

- 구별 방침 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(내·외부위원) 개최 후 인용 대상 선정

- 선정후 市에 최종 대상 통보

☐ 추진일정

○ 최종 선정 대상 명단 통보(시→자치구) : '22. 2. 28.(월)

※ 자치구별 개별 통보 완료

○ 선정자 및 탈락자 개별 통지(자치구→예술인) : '22. 3. 1.(수)~4(금)

○ 이의신청 : '22. 3. 7.(월)~11.(금)

○ 이의신청 심의 및 결정 : '22. 3. 14.(월)~18(금)

○ 지원예산 교부(시→자치구) : '22. 3. 25.(수)까지

○ 지원대상 지급실시(자치구→예술인) : '22. 3. 28(월)~. 끝.